

Fi 리볼빙 정기예금(6M)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
상품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i 리볼빙 정기예금(6M) (대면,비대면 / 단리,복리) 													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													
가입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만원 이상 													
가입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6개월 													
가입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(SB톡톡+,Fi)) 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•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 (복리식) : 6개월 회전주기마다 이자를 지급 • 매월이자지급식 (단리식) 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													
이자율 (24.04.08 현재)	기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• 가입 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(연,세전)</th> <th>대면</th> <th>비대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이율</td> <td>3.70%</td> <td>3.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(연,세전)	대면	비대면	기본이율	3.70%	3.70%						
(연,세전)	대면	비대면												
기본이율	3.70%	3.70%												
만 기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 <td>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연0.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연0.1%		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
1개월 이내	마지막 회전도래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이자 계산식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월 단위</th> <th>일 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리식</td> <td>원금×이율/12×월수</td> <td>원금×이율/365×일수</td> </tr> <tr> <td>복리식</td> <td>원금×{(1+이율/12)ⁿ-1} (n은 경과월수)</td> <td>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이자 계산식			월 단위	일 단위	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원금×이율/365×일수	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
구 분	이자 계산식													
	월 단위	일 단위												
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원금×이율/365×일수												
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												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 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									
증도해지 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 <td>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</td> 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증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회전일부터 증도해지전일까지는 증도해지이율 적용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예치기간	이 율	1개월미만	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6개월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증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회전일부터 증도해지전일까지는 증도해지이율 적용
예치기간	이 율									
1개월미만	신규일(또는 최종회전일)의 보통예금 금리									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								
6개월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증도해지 시, 개설일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회전일부터 증도해지전일까지는 증도해지이율 적용 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증도해지이율 적용 			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<p>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p> <p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p> <p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p>									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									
만기해지 사전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 									
연계·제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									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하락기에 약정이율 인하 가능성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반면, 상승기에는 약정이율 인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증도해지하는 경우**, 가입기간에 따라 **증도해지
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예 아니오 ☞ “증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월 일 예금주:

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